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존 장병의 진료 비용의 감면) ①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존 장병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병원(이하 “군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받는 경우: 진료 비용에서 치과의 보철재료대 및 그 기공료를 제외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감면

2.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받는 경우: 진료 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감면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한다) 이용 비용

나. 치과의 보철재료대 및 그 기공료

3.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이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대상에 대한 진료 비용(약제 비용을 포함한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감면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진통·진양(鎮痒)·수렴(收斂)·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外用藥劑))(이하 “외용약제”라 한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 중 해당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생존 장병 본인이 부담하는 외용약제를 제외한 외용약제만 해당한다]. 이 경우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생존 장병 본인이 부담하는 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대상

② 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

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유족의 진료 비용의 감면)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유족(이하 “지원대상유족”이라 한다)이 군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진료 비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60퍼센트를 감면
2. 지원대상유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진료 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을 제외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60퍼센트를 감면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서식) ① 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천안함 피격사건 의료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심리상담 등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

상자 추천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의 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개월(필요시 30일 이내에서 연장)
신청인	성 명	대상구분	[] 생존 장병 [] 지원대상유족
	군 번	주민등록번호	
	소 속	휴대전화번호	
	주 소		

피해 내용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상이 부위 (진단명) 1. 2. 3.	최초진단년월일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입은 상이 부위를 검사·진료한 의료기관 1. 2. 3.	
	현재 심신장애 1. 2. 3.	현재 심신장애로 진료받은 일자 (기간)
	현재 심신장애와 관련하여 검사·진료받은 의료기관 1. 2. 3.	
	기타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입은 부상·질병 및 보유한 심신장애 관련 진술 ※ 부상 또는 발병 당시의 상황, 부상·질병 및 심신장애의 증상과 정도 등을 6하원칙에 따라 기술합니다. (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군 경력증명서 등 신청인이 생존 장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생존 장병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사망장병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원대상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사망장병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신청인의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천안함 피격사건 의료지원 신청서에 기재한 부상·질병 및 그 밖의 심신장애에 대한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서류 나.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제54조의4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신청인이 생존 장병인 경우로서 해당 심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의료지원 여부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료의 범위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및 민감정보를 국방부장관이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이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 제7조에 따른 상담 등의 지원 및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로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 및 민감정보를 국방부장관이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 여부 및 신청인의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필요한 진료의 범위 결정을 위한 자료로 국가보훈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병원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해당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관련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및 민감정보를 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이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진료 및 진료 비용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로 국가보훈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첨부서류 미비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 그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본인이 제출한 첨부서류를 통해 천안함 피격사건과 인과관계 및 진료범위를 판단하므로, 첨부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료의 범위는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한 진료에 한정됩니다. 다만, 지원대상유족의 경우에는 해당 진료 중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치료에 관한 진료로 그 범위가 한정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인란의 주소란에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신청인란의 대상구분란에는 해당하는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3. 신청인란의 군번란 및 소속란은 현역군인인 생존 장병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피해 내용란의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부상·질병을 입은 신체부위란은 생존 장병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5. 피해 내용란의 보유한 심신장애란에는 신청일 현재 보유한 심신장애에 관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통지
신청인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신청인 및 국가보훈부장관

심리상담 등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대상구분	[] 생존	장병 [] 지원대상유족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심리 상태	[] 우울		[] 불안	[] 수면	[] 분노
	[] 트라우마		[] 자살	[] 기타	
신청 내용	[] 심리상담		[] 심리검사		
	[] 정신건강증진 교육		[] 기타()		
신청 사유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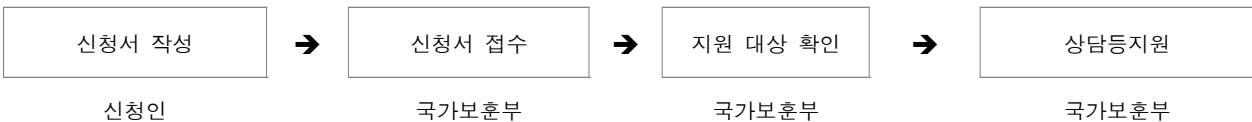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군 경력증명서 등 신청인이 생존 장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생존 장병인 경 우에만 제출합니다) 3. 사망장병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원대상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사망장병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제3호 및 제4호의 첨부서류는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 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대 상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로 신청인이 지원대상유족임을 확 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심리 상태란’에는 현재 신청인의 심리 상태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합니다(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란’에는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상담등지원의 내용을 선택합니다(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유란’에는 신청 배경, 상담 의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	성 명		생 존 장병과의 관계	
	생년월일 (성별)	()	전화번호	
	주 소			
용도		채용시험 가점	가점비율	5%
제출처				
위 사람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채용 시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 방 부 장 관 직인				
※ 유의사항				
1.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위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에 취업사실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취업 사실을 통보하실 때는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에서 제공되는 취업자 통보서를 이용하실 수 있 습니다.				
우	주 소		전 화	전 송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추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						
	전화		휴대전화		e-mail @					
주소										
최종 학력	학교			년		전공(부전공)		졸업성적		
	[]졸업(예정) []중퇴 []휴학 []수료 []검정고시 []독학사							/		
직업 훈련	훈련기관		훈련과목		훈련기간		병역사항		[]필 []미필 []면제	
					~		복무기간		년 월	
자격 · 면허	1		운전면허[]종, []대형 []보통		2					
	3				4					
외국어 능력	외국어명		수준		공인시험		등급 · 점수		취득일자	
			[]상 []중 []하							
			[]상 []중 []하							
주요 경력	취업처		직위		담당직렬		재직기간		퇴직사유	
							년 월			
							년 월			
취업 희망 조건	순위		희망직렬		희망근무지역		희망직무내용(구체적으로)			
	1									
	2									

기타 희망 및 특기사항 (질병 등 건강상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군 경력증명서 등 신청인이 생존 장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취업지원 대상여부 확인 (*공무원이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취업인원 보훈특별고용(명), 특별채용(명)	취업횟수 회
-------------------------------	------------------------------------	-----------

취업 추진사항

연번	연월일	직렬확보 및 상담안내 또는 상담내용	업무 담당	
			소속	담당자 성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국방부장관이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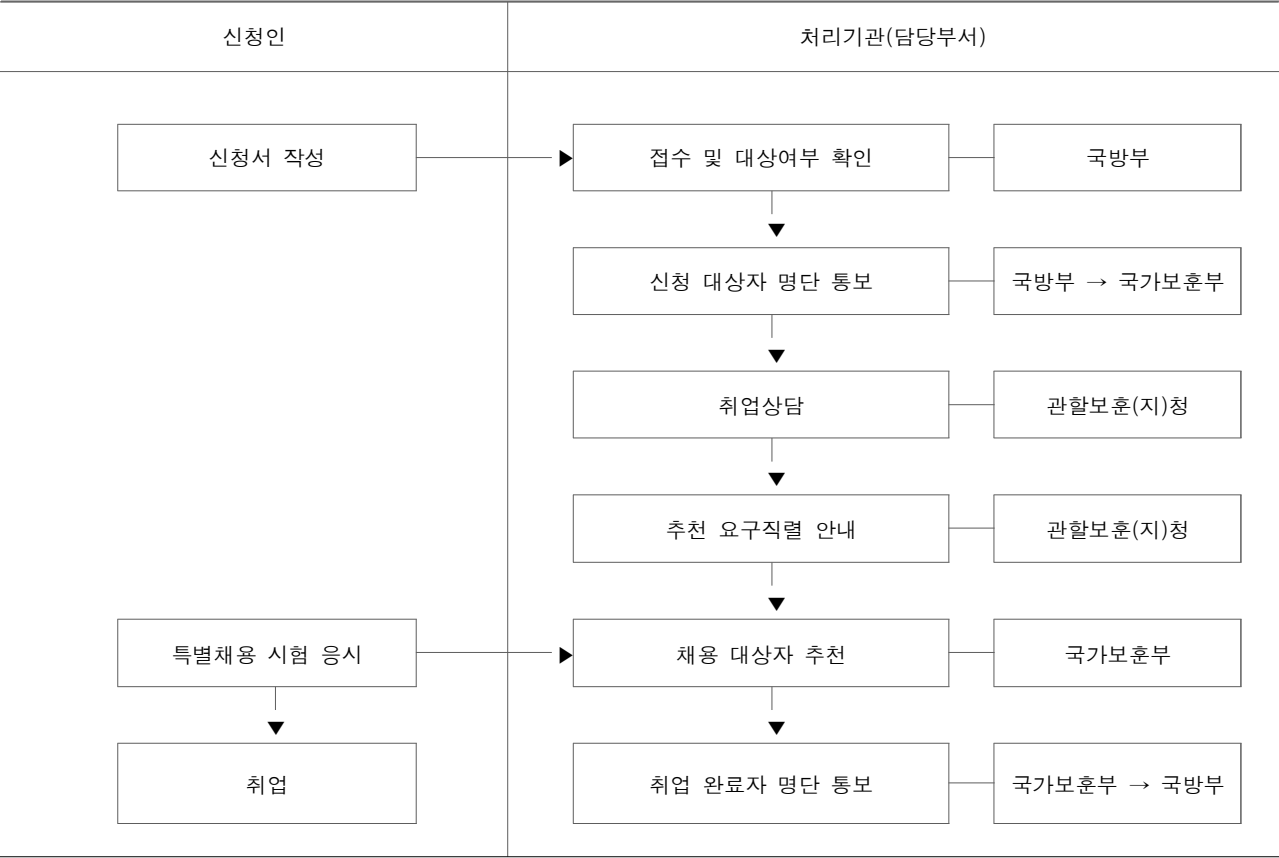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로 국가보훈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취업희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	----

취업 희망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우편번호:)	

최종 학력	학교	년	전공(부전공)	졸업성적
	[]졸업(예정) []중퇴 []휴학 []수료 []검정고시 []독학사			/

직업 훈련	훈련기관	훈련 과목	훈련기간	병역사항	[]필 []미필 []면제
			~	복무기간	년 월

자격 면허	1	운전면허[]종, []대형 []보통	2	
	3		4	

외국어 능력	외국어명	수준	공인시험	등급·점수	취득일
		[]상 []중 []하			
		[]상 []중 []하			

주요 경력	취업처	직위	담당직종	재직기간	퇴직사유
				년 월	
				년 월	

취업 희망 조건	순위	희망직종	희망근무지역	희망직무내용(구체적으로)
	1			
	2			

기타 희망 및 특기사항(질병 등 건강상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군 경력증명서 등 신청인이 생존 장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취업지원 대상여부 확인(*공무원이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취업인원 보훈특별고용(명), 특별채용(명)	취업횟수 회
----------------------	----------------------------------	-----------

취업 추진사항

연번	연월일	직종 확보 및 상담 안내·내용	업무 담당담당자	
			소속	담당자 성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국방부장관이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로 국가보훈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